



개인연금의 이해(2): 개인연금의 다양한 종류

이상우 선임연구원

■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보험상품으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 및 설계가 가능함.

- 개인연금은 첫째, 연금지급이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된 일정기간에 지급되는 확정연금(annuity certain)과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생존연금(life annuity)으로 구분함.
- 둘째, 어느 연령 또는 어느 시기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되는 정기연금(temporary annuity)과 피보험자가 사망 전 생존해 있는 동안 지급을 계속하는 종신연금(whole life annuity)으로 구분함.
- 셋째, 연금계약과 동시에 연금지급이 개시되는 즉시연금(immediate annuity)과 연금계약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지급되는 거치연금(deferred annuity)으로 구분함.
- 넷째, 피보험자가 한명인 단생연금(single annuity)과 피보험자가 여러 명인 연생연금(joint annuity)으로 구분함.
- 다섯째, 연금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순수연금(straight life annuity)과 연금지급에 일정한 보증이 있는 상환보증연금(refund annuity)으로 구분함.
 - 후자의 경우 연금수취인이 일찍 사망하더라도 5년, 10년, 20년 등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지급보증부연금과 연금 구입가격과 동일한 금액까지 연금이 지급이 계속되는 분할상환보증부연금 등으로 구분함.
- 여섯째, 소득공제 또는 자본이득에 세금이 감면 또는 면세되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제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함.

■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실질적 자산가치 보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연금상품 이외에 2002년 이후 변액연금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연금이 등장함.

- 실적배당형연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금리(확정형) 또는 금리연동(연동형)으로 분리하여 연금액을 지급하는 일반연금과는 달리 보험회사의 적립보험료 운용 실적 등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함.
 - 일반연금을 전통형연금, 실적배당형연금을 투자형연금으로 부르기도 함.
- 실적배당형연금의 경우 보험료를 주식·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실적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변액연금과 보험료를 주가지수 등 특정지표 또는 자산*에 연계하고 그 수익을 연금액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자산연계형연금으로 구분함.
 - * 현재 채권금리연계형, 주가지수연동형, 금리스왑연계형이 판매 중임.
- 변액연금은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지만, 투자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일반연금 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
- 자산연계형연금은 연계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, 변액연금보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. **kiri**

〈그림 1〉 개인연금의 종류

